

〔問〕 本人은 화재보험에 附保된 特殊建物の 一部를 賃借使用하던중 本人 從業員의 失火로 화재가 발생하여 同建物에 相當한 被害를 受 傷, 建物所有主는 多幸히 保險會社로부터 保險金을 支給받고 피해 복구를 완료하여 本人은 安심하던 차 其後 保險會社로 부터 損害賠償請求 書翰을 接受하였읍니다.

同損害賠償請求 근거와 重過失에 의한 失火가 아니라도 損害賠償을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를 回信하여 주십시오.

(참고) : 賃貸契約書上 賃借人의 責任으로 歸着할 事由로서 財産價値를 減少시켰을 時는 其損害全部를 賠償함. 등의 내용이 約定되어 있음

(答) 1 이 制度는 損害保險契約에서의 利得禁止의 原則에서 나온 것으로서 保險事由로 인한 被保險者의 財産上의 損害를 補償하여 준 경우에 保險金 以外에 被保險者(建物所有主)가 다른 利益을 얻고 있을 때에 (例; 保險金도 받고, 賃借人에게도 損害賠償을 받는 경우) 그 利益의 歸屬을 保險者에게 돌리는 이른바 保險者代位制度에 근거하는 것입니 다.

우리나라 商法 第681條와 第682條는 「保險의 目的」과 「第三者」에 대한 保險者代位를 各各 規定하고 있읍니다(火保普約

第24條 참조).

貴下의 경우는 「第三者」에 對한 保險者代位에 의한 것입 니다.

保險者代位에 의하여 保險會社가 取得한 權利의 限度는 保險會社가 被保險者에 대하여 支給한 金額의 限度까지가 됩 니다. 즉 保險價額의 80%를 保險에 부쳤을 경우에는 保險會社가 取得하는 權利는 80% 만이 認定됩니다.

相談코너

特殊保險

2) 失火責任에 關한 法律(法律第607號)에 依하면 失火로 因한 違法行爲로 他人에게 損害를 加한 者는 重大한 過失이 있을 때에 限하여 責任을 진다 고 規定하고 있으므로 重大한 過失에 因한 失火가 아니면 損害賠償할 義務는 없읍니다.

그러나 貴下의 경우는 保險金을 支給한 保險者가 被保險者(建物所有主)의 權利를 代位받 고 賃借人이 賃借建物の 화재로 損害賠償을 請求하는 것입 니다.

그러므로 貴下는 同建物の 火災가 貴下가 責任질 수 없는 事由에 因한 것이라는 立證을 다하지 못하면 貴下로서는 반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賠償責任을 면할 수 없읍니다. 그 러나 이 경우 貴下는 同一建物인 경우에도 貴下가 使用中인 賃借部分에 對한 損害에 대하 여야만 賠償責任이 있으며 其外 他人이 使用中인 部分에 對한 연소피해는 失火責任에 關한 法律의 適用을 받아 賠償責任이 없읍니다. 끝으로 保險者代位는 民法上의 代位(民法 제399조)와 같은 性質로서 保險會社는 指名債權讓渡의 對抗要件(商法 제450條)의 節次를 밟지 않고도 貴下에 對한 權利를 主張할 수 있읍니 다.

金勝濟

<業務部·次長>